



ISSUE BRIEF Public Governance

OECD/KOREA Policy Centre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

2008. 8. 28(목)/ No. 19

아시아 지역 공공개혁 개요 (2)

1. 개요

2. 몽고 : 관리개발프로그램, 관련법 및 정책 3. 베트남 : PAR 마스터 프로그램(2001-2010)

1. 개요

- o 아시아 국가별 공공부문 개혁 시기는 다양하나, 개혁내용은 유사하게 추진 되고 있음
- o 성과관리제 도입, 지방분권화, 공무원, 특히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
- o 시장형 메커니즘을 공공부문에 도입함 으로써 정부의 효율성을 추구
- 시장형 경제에 적합한 공공관리체계로 재정비
- 정부의 불필요한 업무는 민간및 비정 부기구 활용 강화
- o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, 시민의 편리성 제고

2. 몽고 : 관리개발프로그램 (Management Development Program), 관련 법 및 정책

관리개발프로그램

- o 1992년,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함으로써 분권화를 추진하고, 행정 기관간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함
- o 지방분권화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의 지식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
- o 1994년, 공무원법(Public Service Law)을 통해 공무원의 법적 근거를 정의하고, 공무원의 업무, 기능 및 책임성 등을 정의하기 위해 정부의 권한을 명확히 함
- o 정치적 영향력에서 독립적인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,

전문화된 유능한 공무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함

- o 1996년, 정부활동 및 구조 개혁을 위한 개혁정책을 마련하고, 성과 기능을 중심 으로 정부 조직을 재정비
 - 일부 불필요한 정부기능은 민간 및 비정부기구에서 이행토록 함

행정개혁 관련법 및 정책

o 공공서비스개혁을 추진하는 정책은 정부 서비스법(LSG: Law on Government Service)과 공공부문관리 및 재정법 (PSMFL: Public Sector Management and Finance Law)에 규정되어 있음

(1) 정부서비스법 (LSG)

- o 정부서비스법에서는 다음을 규정함
- 신분의 정치적 중립성, 인사의 투명성, 공무원 채용의 동등한 기회 제공, 공무원의 권리 및 의무 규정, 윤리 강령, 수입과 재산신고, 친족주의 방지 등
- 또한, 공무원 관련된 문제를 독립적으로 전담하는 위원회(Council)를 설립하고, 정부가 아닌, 국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함

(2) 공공부문관리 및 재정법 (PSMFL, 2003)

- o 새로운 공공관리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, 정부의 역할 축소를 통해 예산을 감축함
- o 효율적인 시장형 메커니즘을 공공관리 부문에 적용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질과 효과성을 높임

- o 관리상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성과의 효과성을 증진
- 성과기반 예산 편성, 성과협약 체결 및 성과지표에 기반한 성과보고 등
- o 관리자급의 인사결정 및 조직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

(3) 중기 공무원개혁전략 (Medium-Term Civil Service Reform Strategy, 2004)

- o 전략의 가치(Values)
- ① 공공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
- 공무원 개혁은 대국민 서비스전달의 향상에 기여하고, 빈곤감축 전략의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
- ② 성과 및 결과지향
- 투입요소가 아닌 결과 중심의 개혁 추진
- ③ 효율성과 가용성 (Efficiency and Affordability)
-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소의 비용을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

o 전략의 원칙 (Principles)

- ① 혜택 (Merit) : 모든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은 자격과 성과만을 기준으로 함
- ② 동등한 기회 : 공무원 채용은 채용 기준에 따라 공개채용에 의함
- ③ 조정기능 (Steering not rowing) : 정책과 운영기능을 분리하여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함
- 정부는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전달을 위한 정책수립과 관리에 책임을 지는 반면, 정책이행은 공공기관, 민간기

- 관 및 제 3의 기관 등의 혼합된 형 태로 이루어지도록 함
- ④ 투입에서 산출물까지 (From inputs to outputs) : 재정관리 및 예산개혁 에서 적용됨
- ⑤ 성과연계 보상 (Performance-related rewards)
 - 국가 및 예산조직의 성과관리능력 및 전략기획 능력 강화, 공무원 인적자원개발 향상 등

- < 예: 내각실의 성과관리개혁 > -

- o 2003년 PSMFL 채택 이후 내각실 (Cabinet Secretariat) 성과관리 개혁 착수
- 모든 공무원은 관리자와 성과협약에 서명을 해야 함
- 0 내각실의 주된 기능은 정부부처, 내각 및 의회 간 조정 기능
- 특히 행정개혁 조정 기능을 가짐
- 2003년 인시위원회의 설립으로 내각실의 인사 관련 업무 감소
- 정책관리 및 전략기능을 이행할 때, 정부부처들에게 국가개발, 전략기획 및 경제정책 등 국가 정책에 관한 권고안 제시
- 3. 베트남 : PAR 마스터 프로그램 2001-2010 (Public Administrative Reform Master Program)
- o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정치 체계를 유지하되, 경제 성장을 위한 시장 경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공공행정개혁을 2010년까지 추진
- o '01년 4월, 국회에서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행정부 형성을 위한 주요 행정 개혁 정책 제안

- '01년 9월, 총리의 승인으로 "PAR 마스터 프로그램(2001-2010)" 공표
- o 프로그램에서는 행정개혁을 위한 4대 우선추진분야 선정

① 제도개선 ② 조직개혁 ③ 공무원 역량 개발 ④ 재정개혁 등

9가지 세부목표

- o 현대화·산업화에 적합한 메커니즘, 정책, 제도 구축 및 개선
- 특히, 행정조직 및 운영, 경제제도 등 포함
- o 관료적이며 불필요한 행정절차 폐지 및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투명한 간소 화된 행정절차 개발
- o 공공기관의 기능, 업무, 권한 및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정의
 - 불필요한 업무는 민간기관 및 비영리 기구 등에게 이양
- o 체계적인 정부의 조직구조 재편
- 정부부처간 상호연계성 강조
- 정책 및 가이드라인 제시, 모니터링 등 거시적 관리에 중점
- o 지방분권화(중앙-지방, 지방간)를 위한 신규 규정 제정 및 발효 ('05년)
 - 각 기능, 업무, 권한 및 조직구조가 명확히 정의됨
- o 2010년까지 적정한 수준의 공무원 규모 및 역량 강화

- o 공무원 급여 제도 개선
- o 행정기관, 공공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요구 에 부응하기 위한 재정제도 개선 ('05년)
- o 국정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계획

5가지 이행 솔루션

- o 리더십과 가이드 역할 강화
- o 정치체제 개혁의 일환으로 공공행정 분야 개혁 추진
- o 행정개혁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동시에 추진
- o 재정과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
- o 대국민 정보 제공 및 홍보활동 강화

국가 보조프로그램 (sub-program)

- o 법문서의 질적 향상 및 문서 개발, 발행 시스템 개선
 - 법무부(Ministry of Justice)와 국무조정실 (Office of Government)에서 추진
- o 행정기관 역할, 기능 및 조직구조 조사
- 내무부(MHA: Ministry of Home Affairs)와 국무조정실 주관
- o 공무원 감축, 역량 강화 및 급여체계 개선
 - 내무부 (MHA) 담당
- o 행정기관, 공공서비스전달기관을 위한 재정운영메커니즘 개선
- 재정부(Ministry of Finance) 담당
- o 행정체제 현대화 및 개선 : 국무조정실

담당

프로그램 목표이행 책임

- o 총리는 "PAR 마스터 프로그램 (2001-2010)" 이행에 대한 총괄적 책임 소지
- o 정부운영위원회(Government Steering Committee on PAR)는 총리를 보좌하고,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기적으로 제공
- o PAR 행동계획(Action Plans) 책임기관은 이러한 계획을 제정하고 이를 승인받기 위해 총리에게 제출
- o 정부조직 및 인사위원회(Government Committee on Organisation and Personnel, 現 MHA)는 기획투자부(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), 재정부 (Ministry of Finance) 및 국무조정실과 함께, 성공적인 "PAR 마스터 프로그램 (2001-2010)" 이행을 위한 대내외적 자원 활용 계획 수립
- o 마스터 프로그램과 PAR 운영위원회 지침을 기반으로, 정부부처 및 지방위원회 등은 5개년 및 연도별 계획 수립
- o 조직 및 인사위원회(Government Committee on Organisation and Personnel, 現MHA)와 국무조정실은 부처의 이행사항을 평가 및 모니터링하고, 정기적으로 중간결과를 정부 및 총리에게 보고해야함

프로그램 평가

- o 1단계(2001-2005년) 개혁은 제도개선, 조직개혁, 인적자원개발, 공공재정개혁 등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짐
 - 원스탑샵(one-stop shop) 도입을 통한 시민과 상호작용(transaction) 가능 및 행정절차 간소화
- o 2단계 개혁은 정부의 의지 및 현재 진행 상태를 고려할 때, 보다 가속화되어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행될 것임
- o 정부는 마스터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보조프로그램 설립, 행정개혁 및 관련개혁간 조정 기능 강화
- o 지방분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는 있지만,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행정부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임